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730호)

2022.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1년 9월 29일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스스로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4조의2(공공일자리 등 지원)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u> <u>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u> <u>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u> <u>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u> <u>자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u> <u>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u> <u>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중증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얻기 힘들고,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 근거를 이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¹⁾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²⁾를 근거로 수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자치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

단체 등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며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둘째,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³⁾, 직접적인 장애인 근로자 임금 지원 및 일자리 사업 등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과 현행 법 체계, 다른 사업 간의 중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문 의 처
02) 6788-5545